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서순기*, 이상한
경북경찰청*,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The Child Sexual Assaults by Kin - The Experience of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 -*

Sun Ki Seo*, Sang Han Lee

KyungPook Metropolitan Police Agency,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bstract - News from the media on sexual assaults to children committed by natural fathers doesn't attract social attention any more. The number of crimes related to Child Sexual Assault(CSA) is increasing every year in spite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in Korea". The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SC-CSA) was established in Daegu, June 2005. The YoungNam District SC-CSA provides forensic evaluation of physical evidenc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the victims less than 13 years of sexual assaults simultaneously. This study carried out 36 cases of CSA by kin reported to YoungNam District SC-CSA, among 180 cases in total until December 2006 since its opening. Most of the victims were girls (32 cases). 28 cases (78%) were indecent assaults (78%) and 8 cases (22%) were rapes. The assailants were overwhelmingly males (35 cases). The assailants of 21 cases (58.3%) were identified as the victims' natural fathers. The incident locations were victim's residence (31 cases, 86.1%) and the victims had been sexually assaulted regularly for many years (25 cases, 69.4%). Considering the above research, we can conclude that CSA committed by ki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CSA is not a one-time incident, but consistently occurring crime. However, in 22 cases (61.1%), the victim's guardian didn't want to report about it or punish the assailants. As the assailants were natural fathers or relatives of the victims, the other family members probably thought it might be shameful to reveal their wrong doings and would lead to defamation of their

family's reputation. The SC-CSA provides the counseling and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s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Due to the guardians' misjudgment, the incident is sometimes not reported to the police. By not reporting the incident to the police, the assailant freely commits other crimes, which multiplies victims. The legal Act of supporting the management of the SC-CSA is still not regulated, so the stability of the SC-CSA is not guaranteed, yet. Even though it is obligatory to report incidents to the police, some cases are still not reported. Currently, there are three SC-CSA centers : in Seoul, in Daegu, and in Gwangju. More centers need to be established to diminish CSA cases in Korea.

Keywords :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CSA), kin

I. 서 론

2007년 2월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선포되었다. 1년 전 이웃 신발가게 주인 김 모(53)씨에게 희생된 허 모(당시 11세)양을 추념하며 성폭력 추방을 다짐한 것이다.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자 흥기로 살해하고 불태운 김씨는 2년 전에도 여아를 성추행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다.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가 성범죄 등 전과(前科) 9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연인원 3만 5000명이 40일 넘게 찾아 헤맸던 제주도 양 모(9세)양은 2007년 3월 16일 실종되고, 한 달이 더 지나 4월 24일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성추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 집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살던 송 모(49)씨였다. 송씨도 성범죄를 저질러 7년간 감옥에 있다가 2년 전 출소한 23범의 전과자였다. 지난 10년간 강간범은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은 4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2000년 시행 첫해보다 2배나 늘어났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수감 중인 성폭력범은 4,041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2004년 702건, 2005년 770건, 2006년 837건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는’ 성폭행범을 또 다시 거리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들에 대한 방치 및 관리 부실이 제2, 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폭력범의 징역형은 19%에 지나지 않고 81%가 벌금형(35.4%)이나 집행유예(45.6%)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¹⁾.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범의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너무나 관대한 편이다. 아동 성폭력범의 징역형은 18.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1%가 벌금형(35.4%)이나 집행유예(45.6%)로 풀려났다. 더구나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는 형기(刑期)를 마친 성폭력범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²⁾. 신문에서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해 특집기사로 다루었다. 그만큼 아동 성폭력이 많고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듯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피해는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피해 아동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면서 나 하나만 참으면 가정의 행복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며 배신과 분노감, 가해자에 대한 양가 감정, 무력감, 순결 상실감을 호소하며,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³⁾.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4년 상담사례 2,362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136건(5.75%)이었다. 2005년에는 219건, 2006년에는 313건으로 증가했다⁴⁾. 법원 판결이 확정된 친부의 성범죄는 2001년~2006년 사이 241건이었고 의무 등에 의한 성범죄까지 합하면 510건에 이르고, 드러나지 않은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에

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과 접근 방법 그리고 각종 법과 사회 제도는 올바르고 정당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사례를 통해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최선의 길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접수(전화상담 제외)된 180건(2005년 50건, 2006년 13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36건(2005년 11건, 2006년 25건)⁵⁾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피해자 구분, 피해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성별·연령별 구분, 피해 장소별, 피해 횟수, 경찰신고여부, 해바라기 아동센터 인지경로 등으로 구분하여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777조의 친족의 규정에 의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III. 결 과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8개월간 친족에 의한 피해사례는 36건으로 전체 상담사례 180건 중 20%를 차지하였다. 피해사례 36건의 52.7%(19건)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였고, 경북 지역이 30.5%(11건)이었다. 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여아가 32건(88.9%), 남아가 4건(11.1%)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성별, 연령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2005. 6. ~ 2007. 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구분	어린이(13~8세)	유아(7세 이하)	계
남	1	3	4 (11.1%)
여	15	17	32 (88.9%)
계	16 (44.4%)	20 (55.6%)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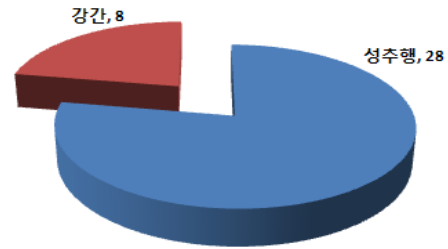


그림 1. 피해 유형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실제 피해 사례]
<p>김00(여, 4세)는 백일 이후 냉이 많아졌다. 음부가 아프다는 호소가 잦았고, 빨강게 부어오른 발적이 있었으며, 진료시 바지를 내리려하면 심하게 거부하였다. 05년 2월경에는 음부 염증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백일 경기 저귀에 피가 묻어있었고, 음부에 발적이 있었다. 3세 때는 조부의 방에서 아동이 심하게 울어 가보니 피가 떨어져 있고, 다음날 아동이 빨래통에 걸려 넘어져 운다고 했는데 흰바지에 빨강게 피가 묻어나 있었고, 음부가 찢어져 있었다. 피해아동은 백일 경부터 조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것이다.</p>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그림 1).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한 경우를 의미하며(형법 제297조)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등)에 해당한다. 성추행(형법 제298조)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 성희롱과 다른 점은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가 21건(58.3%)으로 가장 많은 가해자임을 알 수 있고, 조부, 의부, 사촌 등 피해자와 가까울수록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5건(97.2%), 여성 1건(2.8%)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32명(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대부분이 성인 남자(31건, 86.1%)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연령별 친족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분포는 표 2와 같다.

24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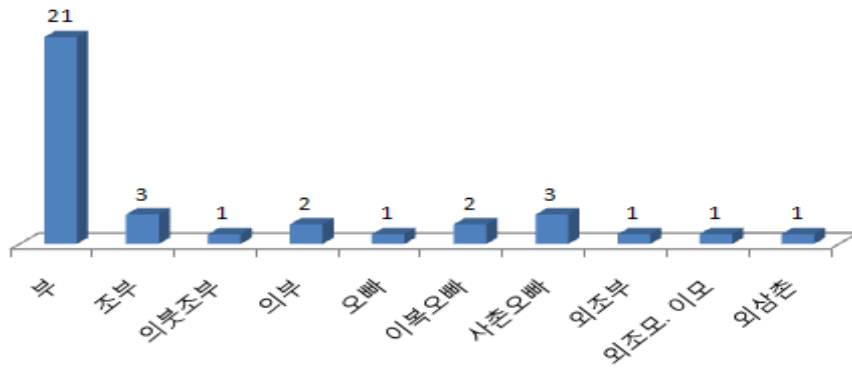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표 2. 성별, 연령별 친족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2005. 6. ~ 2007. 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구분	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8세)	유아 (7세이하)
계	36	32(88.9)	2(5.5)	2(5.5)	
남	35(97.2)	31(86.1)	2	2	
여	1(2.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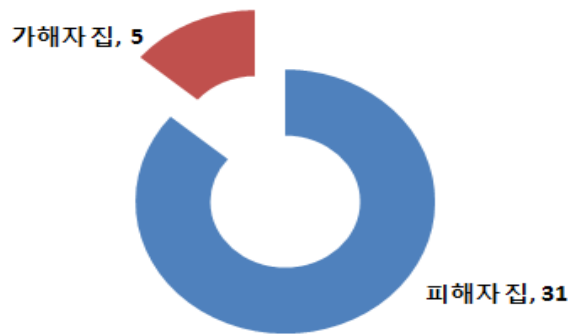


그림 3. 성폭력 피해장소에 따른 구분 (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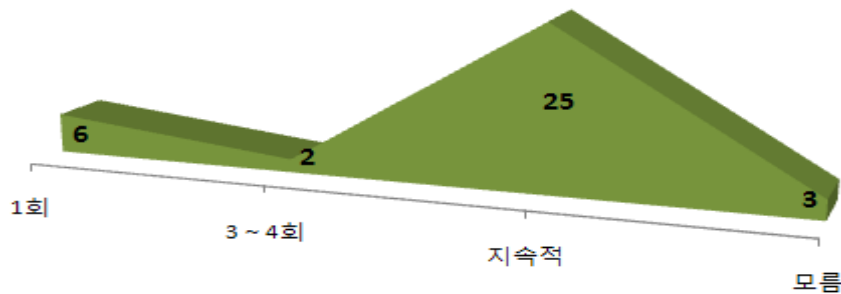


그림 4.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횟수(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피해 장소를 살펴보면 피해자 집에서의 피해가 31건 (86.1%)으로, 대부분이 가해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가해자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것도 있다(그림 3).

피해횟수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3~4회가 2건, 한 번에 그친 경우가 6건(16.6%)으로 많은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여부를 살펴보면 처벌을 원하는 것 보다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22건, 61.1%)으로 집안망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으로 신고 및 처벌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그림 5).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인지 경로는 타기관 소개(13건, 36.1%)로 인한 상담건수가 제일 많으나 자발적(11건, 30.5%)인 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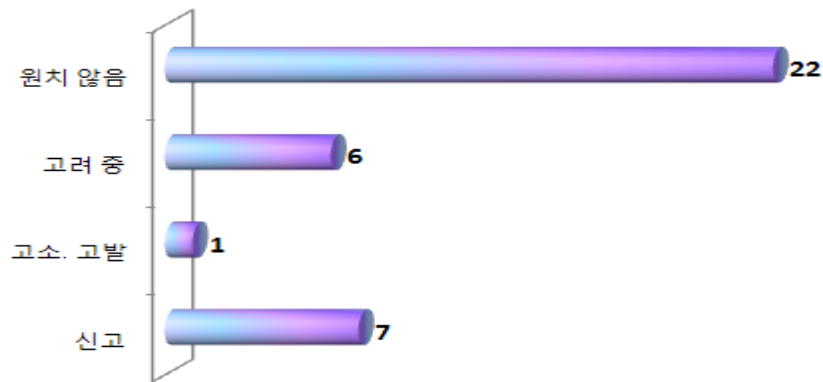


그림 5.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신고여부 (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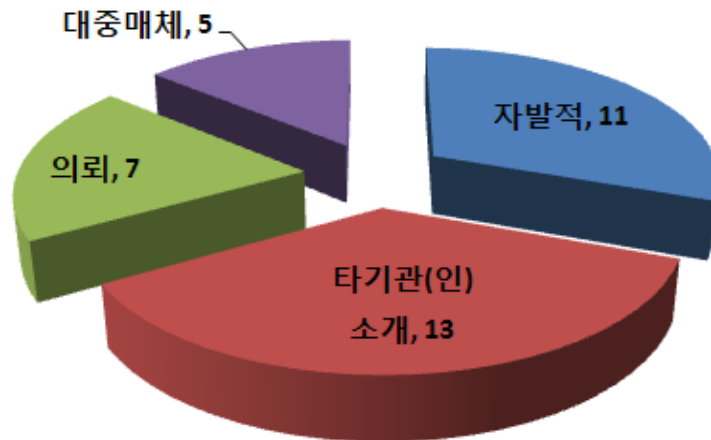


그림 6.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의 인지 경로 (2005. 6. ~ 2007.12.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

IV. 고 찰

2003년 여성부는 ‘어린이 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종합진료체계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업무의 70%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법률·상담 업무이고 나머지는 성폭력관련 홍보와 정책 업무로 이루어지며, 서울 센터는 연세대학교, 호남은 전남대병원, 대구는 경북대병원으로 부터 성폭력 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심리평가 및 치료, 정신과적 심리상담, 법률적 상담 및 지원에 이르는 Team approach & One-stop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를 보면,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2005년 6월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총 상담 180건 중 36건으로, 20%를 차지하였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현황⁶⁾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친족 및 친인척이 2317건 중 360건으로 15.5%를 차지하였다. 강⁷⁾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성학대의 가해자는 친부를 포함한 친족이 36.3%로 나타났다고 한다. 상담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보다는 실제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의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아(32건, 88.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아의 경우 신체적으로 피해상대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등 신고가 많은 반면, 남아의 경우 신체적 특징 등이 나타나지 않아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적은 수(4건)이지만 남자아이에 대한 성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⁸⁾에서도 “최근들어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남자아이와 청소년이 성폭행·추행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성폭력은 강자가 힘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다를 바가 없다.”면서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남녀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는 무조건 여자라는 잘못된 인식 변화와 남아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 사

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의사표현이 힘들고 의지가 약한 유아의 피해가 크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에서의 성예방 교육과 관심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를 입기 전에 ‘싫어요’ 등 의사표현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 유형으로 보았을 때, 성추행이 28건(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동성폭력은 처음부터 강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강제적인 접촉 등 성추행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강간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06년 1~6월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은 1,106명 중 485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⁹⁾. 총 1,355명의 피해 청소년들 중 강간 231명(17.0%), 강제추행 397명(29.3%), 성매수 704명(52.0%), 성매수알선 22명(1.6%), 음란물 제작 1명(0.1%)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 21명(1.5%), 여자 1,334명(98.5%)이다. 피해자 평균연령은 13.8세이며 13세미만 아동 청소년의 피해[7세미만 58명(4.3%), 7세이상 13세미만 288명(21.3%)]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628명중 친부·의부 등 아버지에게 의한 피해자는 75명(11.9%)이며, 이 경우 피해가 수회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부·친부 등 아버지에게 의한 피해가 21건(58.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11.9%보다 높은 수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아동성폭력은 아이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기에 아직도 미미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심보영¹⁰⁾은 “아이들은 피해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해자에게 증형을 내리는 것”이라며 산산조각난 피해 어린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선 상담 치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아버지에 9년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수기에는¹¹⁾ “A(41세)씨는 딸이 10살 때부터 성폭행을 시작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자신 외의 남자는 만나지도 말라고 했다. 딸이 남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놀러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해 흥기를 휘둘렀고, 딸은 다리에 10바늘 이상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B(43)씨는 3년 전 “아빠 생일에는 원래 선물로 주는 것”이라며 6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뒤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등 우리주변에 있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알리고 있다.

가해자의 97.2%가 남성이었으나 2.8%(1건)는 여성이 가해자였으며, 남아의 피해처럼 여성가해자도 조금씩 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 공개한 485명 중 483명(99.6%)이 남성, 연령별로 보면 20대 103명, 30대 145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115명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분류하면 회사원 48명, 자영업 47명, 일용노동 54명, 무직 140명 등(목사, 복싱코치, 국악인, 철학관 운영, 매니지먼트 대표, 사진작가, 사업가 등)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나 2명(0.4%)은 여성이었다.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가 25건(69.4%)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동이고, 또 발견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61.1%(22건)으로 가정 속의 범죄로 인해 집안망신이라는 생각으로 쉬쉬하는 경향으로 신고 및 처벌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친족성폭력이 경우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력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피해일로부터 최장 10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¹²⁾.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6년 성폭력상담건수 2,317건 중 257건(11.1%)이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피해상담이었다¹³⁾.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가 64건(24.9%), 8~13세의 어린이가 125건(48.6%), 14~19세의 청소년이 34건(13.3%), 20세 이상의 성인이 32건(12.5%) 순으로 나타나, 유아와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인 13세 미만의 연령대의 피해자가 189건(73.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 사례의 경우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상담을 요청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친족 및 친인척인 경우는 158건(61.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도 친부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등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족 간 성폭력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72건(28.0%)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정아 부연구위원¹⁴⁾은 “친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은 가족들이 신고를 두려워해 외부 유출이 안 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매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신적 치료와 주변의 지지, 신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타기관 소개(13건, 36.1%)로 인한 상담건수가 제일 많으며 자발적(11

건, 30.5%)인 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이 6%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4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떨어지는 기소율을 감안할 때 매년 25,000명의 13세 미만 아동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¹⁵⁾.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와 범죄발생건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상담 및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성폭력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수면위에 떠 있는 빙하처럼 그 발견 및 치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센터의 증설이 필요하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심리평가 및 치료, 정신과적 심리상담, 법률적 상담 및 지원에 이르는 Team approach & One-stop 서비스(서울 등 광역시도에서만 one-stop 서비스가 되고 있는 실정)를 하고, 가해자 처벌보다는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두고 법적, 의료적, 교육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탁기관인 병원(연세의료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에 초차도 센터에 관한 정관이 없어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뢰하였을 경우 많은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강제조항이 없어 보호자가 데리고 오지 않거나 거부하면 진행이 불가능한 시스템적 문제를 갖고 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경찰의 신고도 의무화되어 있지만 피해자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개선이 있어야겠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지속적인 치료 관찰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는 가운데 특히 친족에 의한 아동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7년 3월 29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상습 성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토록 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상습적 성범죄자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프랑스¹⁶⁾에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 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특칙’을 두고 있고, 성범죄와 살인, 유괴 등 7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가석방될 경우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부착한 이동전자팔찌를 최대 6년 동안 차도록 하고 있고, 미국¹⁷⁾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자등록법’과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는 ‘성범죄자고지법’(일명 메건법)을 운영하고, 텍사스주에선 성범죄자의 집과 차 앞에 ‘성범죄 전과자’라는 팻말을 부착한다.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 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거세 약물을 투여하기도 한다. 이 제도로 1992~2003년까지 아동 성폭력 범죄는 무려 79% 감소했다고 한다¹⁸⁾. 영국¹⁹⁾에서는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경찰(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까지 갖추고 있으며 스위스²⁰⁾에서는 매우 폭력적인 범죄자나 성 범죄자에 대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해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화하였다. 표창원²⁰⁾은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사회적 보복 효과 등을 거둘 수는 있지만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집중 감시 및 강제치료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면서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아동의 인생을 망쳐놓는 아동성폭력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경²¹⁾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피해자 비디오 진술 녹화제도의 정착,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 등을 주장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계속 되는 진술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그에 대해 고통을 겪게 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가 비디오 진술을 수사 초기에 확보하여 재판과정에서 계속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보호가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아동이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요약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지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매일신문, 가해자 숨방망이 처벌...제2, 3의 피해자 양산, 2007. 5.10
2. 조선일보, '인간 짐승' 방치 언제까지, 2007. 4.28
3. 채규만, 성 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2000년
4.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현황(<http://www.sister.or.kr>)
5.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상담자료
6. 한국아동성폭력 상담소 2006년 통계
7. 강은영,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p1-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서울신문 2007. 2.22
9. 국가청소년위원회, 제12차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자 신상공개, 2007. 4.25
10. 매일신문, 2007. 5.10
11. 서울신문, 친아버지에 9년간 성폭행 여성 수기, 07. 2.21
12. 박선희, 채종민, 반성폭력 관점에서 본 친고죄, 대한수사과학지, 2006 ; 1(1) : 54~71.
13. 한국성폭력상담소, 나눔터 55호, 2007, 16~18page
14. 서울신문, 성폭행범 절반 "한달이상 계속 범행"가족들이 신고 두려워해 범행 장기화, 2007. 2.21
15. 연합뉴스, 2007. 5. 8
16. 한겨레, 2006. 2.21
17. 조선일보 2006. 7. 5
18. 연합뉴스, 2007. 5. 8
19. 한겨레 2006. 2.21
20. 표창원, 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과 제도, 20070227
21. 여성가족부,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070227